

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10. 20.
의회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0. 10. 12. 김세균 의원 등 9명

나. 회부일자: 2020. 10. 15. 회부

다. 상정일자: 제26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
(2020. 10. 20. 상정·심사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김세균 의원)

○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서류제출·증인출석 요구 등에 불응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, 과태료 부과·징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.

○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의 목적(안 제1조)

나.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(안 제2조 및 제3조)

다. 과태료의 부과·징수 절차(안 제4조)

라.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(안 제5조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송성달)

○ 본 조례안은,

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·증인출석 요구 등에 불응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유형에 따라 대상을 세분화하여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과태료 부과·징수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과 행정절차 상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특이사항 없음

6. 소수의견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